등록무효(상)

[특허법원 2022. 4. 20. 2021허2694]



【전문】

【원 고】 주식회사 질경이 (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우동천) (소송대리인 변리사 권두상)

【피 고】코튼 하이 테크, 소씨에타드 리미타다 (COTTON HIGH TECH, S.L.) (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특 담당변리사 민병호)

【변론종결】2022. 3. 23.

【주문】

1

-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】특허심판원이 2021. 3. 12. 2020당7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

[이유]

-]1. 기초 사실
- 가.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(갑 제1호증)
- 1) 등록번호/ 출원일/ 등록일/ 등록결정일 : 상표등록 생략/ 2017. 9. 11./ 2019. 12. 24./ 2019. 12. 24.
- 2) 구성: (이하'이 사건 표장'이라 한다)
- 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생리대, 생리컵, 생리용니커즈, 생리용타월, 생리탐폰, 생리대용벨트, 생리용냅킨, 위생팬티, 의료용생리대, 팬티라이너, 살균티슈, 소독제, 소독용 비누, 의료용 여성청결제, 의료용 질세척제, 의료용 질세정제, 질 항진균제, 성인용기저귀, 약품처리된 물티슈, 의료용 채워진 주사기
 - 나. 피고의 선사용상표
- 1) 구성: (이하 '선사용상표'라 한다)
- 2) 사용상품 : 팬티라이너(pantyliners), 생리대(pads), 생리용 탐폰(tampons), 생리컵(menstrual cups), 살균 물티슈(wet wipes) 등
- 3) 스페인에 소재한 법인인 피고는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면을 이용해 제조한 사용상품에 선사용상표를 표시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스페인 등에서 이를 판매해 왔다.
- 4) 피고는 2007. 11. 14. 선사용상표 "를 '상품류 제3류의 향수 및 화장품(Perfumery and cosmetic products) 등, 제5류의 생리용 탐폰 및 생리대(menstruation tampons and pads), 생리용 팬티, 생리용냅킨, 흡수성 압박붕대, 살균거즈, 의료용 흡수솜 등'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고, 2008. 10. 7. 등록을 받아 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을 받았다.

다.

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경위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) 원고가 2017. 9. 11.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자 피고는 특허청 심사관에게 '원고의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, 제21호에 해당한다'는 취지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다.
- 2) 특허청 심사관은 2018. 2. 1. '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, 제 20호의 거절사유가 있다'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다.
- 원고는 2018. 6. 29.과 2018. 7. 2.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, 특허청 심사관은 2018. 8. 29. 위 거절사유를 해소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.
- 3)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,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원3986호로 심리한 다음,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, 제20호의 거절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9. 9. 25.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해 특허청 심사국으로 환송하는 심결(이하 '환송심결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- 그 무렵 확정된 환송심결에 따라 개시된 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19. 12. 24. 등록되었다. 라. 이 사건 심결의 경위
- 1) 피고는 2020. 3. 9.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, 제2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'라 한다).
- 2)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20당758호로 심리하여 2021. 3. 12. "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인 환송심결(2018원3986)과의 관계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.
-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"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(이하 '이 사건 심결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【이유】

]1. 기초 사실

- 가.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(갑 제1호증)
- 1) 등록번호/ 출원일/ 등록일/ 등록결정일 : 상표등록 생략/ 2017. 9. 11./ 2019. 12. 24./ 2019. 12. 24.
- 2) 구성: (이하'이 사건 표장'이라 한다)
- 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생리대, 생리컵, 생리용니커즈, 생리용타월, 생리탐폰, 생리대용벨트, 생리용냅킨, 위생팬티, 의료용생리대, 팬티라이너, 살균티슈, 소독제, 소독용 비누, 의료용 여성청결제, 의료용 질세척제, 의료용 질세정제, 질 항진균제, 성인용기저귀, 약품처리된 물티슈, 의료용 채워진 주사기
 - 나. 피고의 선사용상표
- 1) 구성: (이하 '선사용상표'라 한다)
- 2) 사용상품 : 팬티라이너(pantyliners), 생리대(pads), 생리용 탐폰(tampons), 생리컵(menstrual cups), 살균 물티슈(wet wipes) 등
- 3) 스페인에 소재한 법인인 피고는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면을 이용해 제조한 사용상품에 선사용상표를 표시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스페인 등에서 이를 판매해 왔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4) 피고는 2007. 11. 14. 선사용상표 "를 '상품류 제3류의 향수 및 화장품(Perfumery and cosmetic products) 등, 제5류의 생리용 탐폰 및 생리대(menstruation tampons and pads), 생리용 팬티, 생리용냅킨, 흡수성 압박붕대, 살균거즈, 의료용 흡수솜 등'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고, 2008. 10. 7. 등록을 받아 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을 받았다.

다.

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경위

- 1) 원고가 2017. 9. 11.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자 피고는 특허청 심사관에게 '원고의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, 제21호에 해당한다'는 취지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다.
- 2) 특허청 심사관은 2018. 2. 1. '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, 제 20호의 거절사유가 있다'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다.
- 원고는 2018. 6. 29.과 2018. 7. 2.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, 특허청 심사관은 2018. 8. 29. 위 거절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.
- 3)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,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원3986호로 심리한 다음,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, 제20호의 거절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9. 9. 25.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해 특허청 심사국으로 환송하는 심결(이하 '환송심결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- 그 무렵 확정된 환송심결에 따라 개시된 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19. 12. 24. 등록되었다. 라. 이 사건 심결의 경위
- 1) 피고는 2020. 3. 9.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, 제2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'라 한다).
- 2)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20당758호로 심리하여 2021. 3. 12. "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인 환송심결(2018원3986)과의 관계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.
-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"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(이하 '이 사건 심결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[이유]

-]1. 기초 사실
- 가.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(갑 제1호증)
- 1) 등록번호/ 출원일/ 등록일/ 등록결정일 : 상표등록 생략/ 2017. 9. 11./ 2019. 12. 24./ 2019. 12. 24.
- 2) 구성 : (이하 '이 사건 표장'이라 한다)
- 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생리대, 생리컵, 생리용니커즈, 생리용타월, 생리탐폰, 생리대용벨트, 생리용냅킨, 위생팬티, 의료용생리대, 팬티라이너, 살균티슈, 소독제, 소독용 비누, 의료용 여성청결제, 의료용 질세척제, 의료용 질세정제, 질 항진균제, 성인용기저귀, 약품처리된 물티슈, 의료용 채워진 주사기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나. 피고의 선사용상표
- 1) 구성 : (이하 '선사용상표'라 한다)
- 2) 사용상품 : 팬티라이너(pantyliners), 생리대(pads), 생리용 탐폰(tampons), 생리컵(menstrual cups), 살균 물티슈(wet wipes) 등
- 3) 스페인에 소재한 법인인 피고는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면을 이용해 제조한 사용상품에 선사용상표를 표시하고 온라 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스페인 등에서 이를 판매해 왔다.
- 4) 피고는 2007. 11. 14. 선사용상표 "를 '상품류 제3류의 향수 및 화장품(Perfumery and cosmetic products) 등, 제5류의 생리용 탐폰 및 생리대(menstruation tampons and pads), 생리용 팬티, 생리용냅킨, 흡수성 압박붕대, 살균거즈, 의료용 흡수솜 등'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고, 2008. 10. 7. 등록을 받아 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을 받았다.

다.

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경위

- 1) 원고가 2017. 9. 11.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자 피고는 특허청 심사관에게 '원고의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, 제21호에 해당한다'는 취지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다.
- 2) 특허청 심사관은 2018. 2. 1. '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, 제 20호의 거절사유가 있다'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다.
- 원고는 2018. 6. 29.과 2018. 7. 2.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, 특허청 심사관은 2018. 8. 29. 위 거절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.
- 3)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,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원3986호로 심리한 다음,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, 제20호의 거절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9. 9. 25.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해 특허청 심사국으로 환송하는 심결(이하 '환송심결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- 그 무렵 확정된 환송심결에 따라 개시된 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19. 12. 24. 등록되었다. 라. 이 사건 심결의 경위
- 1) 피고는 2020. 3. 9.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, 제2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'라 한다).
- 2)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20당758호로 심리하여 2021. 3. 12. "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인 환송심결(2018원3986)과의 관계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.
-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"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(이하 '이 사건 심결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